

"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"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 보험국장

제 목 : 「신경차단술 등에 주사수기로 별도 청구건」 심사 사후관리 관련
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

1.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협회에서 ‘대의협 제813-1954호(2018.5.15.)’ 로 확인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“최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2013~2016년에 이루어진 신경차단술 시행 시 텍사메타손 약제를 사용할 경우 ‘신경차단술’ 과 ‘피하 또는 근육주사’ 등을 동시에 청구한 건에 대해 일괄 정산통보를 받음” 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, ‘일괄 정산통보’ 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‘정산 예정내역 안내 및 사전 확인절차’ 임을 알려드리며,

나. “심사평가원에서 부상병 확인을 통해 별도의 주사 수기료를 인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하여는 제외조치 해줄 것을 요청함” 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, ‘정산 예정내역’ 에 대한 해당 요양기관의 사전 이의 의견제시 비율이 극히 미미*하게 나타났습니다. 다만,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회원 의료기관의 행정력 등을 감안하여 의견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평가원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해당건을 선별·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(* 사전 이의 의견제시 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.16%, 이외 대상건은 4% 이하)

다. 아울러, 정산예정일은 당초 안내해 드린 2018-05-92차 보다 다소 늦춰질 예정이며, 정산마감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사후관리 업무 개요 및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(HP>알림>공지사항 또는 제도정책>보험인정기준>자료실)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. 끝.



안학준

심평원의 청렴지수 고객의 행복지수 "행복의 전화 1644-2000"